

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13594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동호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미송

변론 종결2021. 8. 25.

판결 선고2021. 9. 2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39,145,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145,9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11.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전기 공급계약을, 2019.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장기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지급보증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각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로 산정하고(제3조), 본인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E단체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사유가 발생된 때, 파산,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회사는 사전통지 또는 최고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조).

이행(지급) 보증보험	2018. 11. 13.	C	한국전력공사	72,000,000	2018. 11. 15.- 2021. 2. 14.	(2020. 7. 27. 및 2020. 8. 28.)	29,495,920
이행(지급) 보증보험	2019. 2. 21.	"	D	9,650,000	2019. 2. 21.- 2024. 2. 20.	(2020. 9. 18.)	9,650,000
합계	39,145,920						

C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기요금을 2020. 3.부터 연체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020. 6. 24.자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C은 D에 대한 렌탈료를 2020. 6. 10.경부터 연체하였고 D은 2020. 7. 28.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 7. 3.과 2020. 8. 4.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보험사고일자 2020. 6. 24.), D은 2020. 8. 1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표 '지급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9,145,92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F(아래 라.항)의 사위로, 2020. 5. 19.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0. 5.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8. 4. 27.자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자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20. 5. 19.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2,500만 원 상당,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231,960,000원이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7. 2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2020. 6. 2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인 H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C은 2018. 12. 12. I조합으로부터 여신기간만료일을 2021. 12. 12.로 정하여 2억 2,000만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받았다. F은 같은 날 C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J조합에게 자기 소유인 경북 성주군 K 등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8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C은 2018. 12. 23.자로 F에게 '2억 2,000만 원을 F에게 은행담보물로 차용하였으며 은행계약기간 안에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담보 대출받은 은행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은행 대출금 원금 전부를 담보대출 기간 내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C 명의의 아파트 및 공장을 채권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C은 2019.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C은 2020. 6.경부터 J조합에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F은 2020. 7. 7.경 J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상환독촉을 받았고 2020. 7. 17. 222,227,8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20.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적극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325,000,000원과 공주시 L 토지 및 건물 시가 289,876,500원 합계 614,876,500원 상당인 반면, C의 소극 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0,409,123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1).

1	G	231,960,000원
2	M	130,000,000원
3	D	20,672,580
4	원고	39,145,9202) 한편, 2021. 3. 22. 원고가 충주시에 C을 위하여 19,710,000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구상금채권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2020. 5. 19.을 기준으로 하였다(갑 제10호증).
5	N	9,397,190
6	O	2,873,653
8	P	6,338,380
9	충주세무서	21,400
10	I조합	2억 2,000만 원
합계	660,409,123원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C은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기요금을 2020. 3.부터 연체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한달 정도 후인 2020. 6. 24.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는바, 위 사전구상권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F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2억 2,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의 시가에서 G조합과 F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공제하면 남는 금원이 없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0.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C인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한편, 위 근저당권은 물상보증인인 F이 사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C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것인 점,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등 참조), F은 2020. 7. 17. 대위변제하여 비로소 구상권이 발생,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20. 5. 19. F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25,000,000원에서 G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31,96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93,040,000원 상당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C의 적극재산을 더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은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한편,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채권자 F의 사위로 F 명의의 근저당권 경로 경위, C이 I조합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C에게 지급한 돈은 전혀 없어 정상적인 매매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추인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3억 2,500만 원에서 G조합의 피담보채무액 231,960,000원을 공제한 93,04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39,145,92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39,145,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9,145,9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이지민

별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한편, 2021. 3. 22. 원고가 충주시에 C을 위하여 19,710,000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구상금채권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거나 2020. 5. 19.을 기준으로 하였다(갑 제10호증).